

수원고등법원 2021. 4. 23 선고 2020나2142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# 재판경과

수원고등법원 2021. 4. 23 선고 2020나21424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8. 14 선고 2018가합410649 판결

### 전문

**원고, 피항소인**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

담당변호사 성승용

**피고, 항소인**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동욱

**변론 종결**2021. 4. 1.

**판결 선고**2021. 4. 23.

**제1심판결**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8. 14. 선고 2018가합410649 판결

### 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주위적으로, C와 피고 사이의 2017. 1. 30.경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325,159,45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18,002,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C에게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317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별지 기재 채권을 107,156,891원의 범위에서 양도하고, D의료재단에 위 채권을 이 사건 판결확정일에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218,002,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#### 【변경하는 부분】

- 제1심판결 3쪽 9행의 "원고의 처인 G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7. 2. 29."을 "C의 처인 G는 C의 대리인으로서 2017. 2. 9."로 고친다.
- 제1심판결 3쪽 12행의 "공정증서" 다음에 "(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라 한다)"를 추가한다.
- 제1심판결 5쪽 3, 4행의 "피고는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7일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"을 "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단기간 내에

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"으로 고친다.

## 2. 추가 판단

### 가. 피고의 주장 요지

피고는 고소득 직업인 의사로 재직중인 C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484,230,059원을 대여한 뒤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인데, 그 당시 피고로서는 C의 처인 G의 지인에 불과하여 C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C의 채권채무관계를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었던 점, 그 밖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체결경위, 피고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C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

### 나. 판단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,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).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, 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).

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.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. 그뿐만 아니라 앞서 든 인정사실과 증거들, 을 제1, 2, 4,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, 즉 ① C는 2003년경부터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

있었는데,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C 자녀에 대한 학비·생활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등 C와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C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당시 별지 기재 채권이 유일한 적극재산인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, ③ 이러한 C가 장기간 별다른 채권변제나 채권보전 조치 등이 없었던 피고와 사이에1) 특별한 계기 없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, 이는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, ④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이후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, ⑤ 그 밖에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형성 경위와 내용, 피고와 C의 관계(C는 그 처인 G를 통하여 알게 된 지인으로 피고 또는 가족들과 상당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)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 3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판사**김무신

**판사**김태호

**판사**유현종

**별지**

1) 다만, C의 처인 G(개명 전: K)가 2006. 1. 13. 피고에게 500만 원의 채무 변제조로 유체동산을 대물변제한다는 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한 사실은 확인되고(을 제11호증), 피고도 초기에는 자신의 채권을 위하여 보험금에 가압류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(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C의 신용상태를 인식했음에도 그 이후 장기간 별다른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).